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3342
----------	------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0월 18일 /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상정, 11월 25일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마채숙)

1. 제안이유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전용시설(사회복지 시설)임
- 서울형 키즈카페(시립 길동생태공원점)은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

인 놀이공간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기관명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 위치 : 강동구 천호대로 1298(길동생태문화센터 내 1층)
- 규모 : 전용면적 280m², 지상 1층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 아동 32명(회당) / 종사자 4명
- 개소예정¹⁾ : 2026. 6. (예정)
- 소요예산(시설비)²⁾ : 840백만원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조직 · 인사관리, 회계 ·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위탁기간 : 5년(2026.4. ~ 2031.3.) ※ 예정

1) 아이돌봄담당관-11116(2025.9.18.),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p.4.

2) 아이돌봄담당관-11116(2025.9.18.), p.8.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5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5.9.24.)
- '26년 소요예산(안) : 271백만원(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 인건비 : 109백만원 / 운영·사업비 : 72백만원 / 기자재비 : 90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제7조의 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운영 사무를 아동의 놀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 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나. 예산조치 : 2026년 본예산 편성 요구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I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동의안의 개요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은 기존 길동생태문화센터 1층의 전시실 및 로비 공간³⁾을 리모델링 하여 2026년 6월 개소 및 운영 예정⁴⁾ 시설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7호⁵⁾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놀이,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는 아동전용시설로 사회복지시설임⁶⁾.
-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형 키즈 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관리 및 운영의 신규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3)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길동생태문화센터의 전시실은 ‘05년에 조성된 후 리모델링이 없었으며 현재는 시설 노후화로 이용시민이 거의 없는 실정임.

4) 아이돌봄담당관-11117(2025.9.18.),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p.4.

5)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애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운영과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시설물 관리 등임.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⁷⁾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53조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를 갖춘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생태공원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25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길동생태공원 내 위치한 입지적 특수성을 살려 외부와 연계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아울러 자치구 여건에 따라 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지역 간 공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7)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8)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구별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현황>

(2025.9. 기준)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키즈 시립 카페 구립	-	-	-	-	2	-	-	-	-	1	-	-	-	-	1*	1*	1	-	-	-	2	-	-	-	-	-
소계	1	3	2	2	3	5	4	5	1	7	1	3	4	1	6	3	3	2	2	10	5	4	1	4	6	

*금번(제333회 정례회) 동의안 3건은 마포구(노고산점), 양천구(목동야구장점), 강동구(길동생태공원점) 설치 예정으로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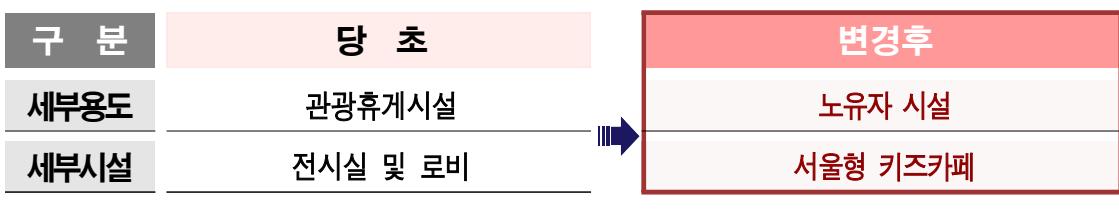
- 이에 향후 시설 운영 시 입지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놀이 환경과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한편, 지역별 아동 수요와 접근성,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형 키즈카페가 균형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확충 및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임.
- 또한 키즈카페가 조성될 장소는 현재는 전시실로 활용되고 있어 건물용도가 관광휴게시설로 되어 있는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설치·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해 보여 세부공정 단계에 대한 관리부서의 밀착관리를 통해 시설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임.

<길동생태문화센터 내 키즈카페 조성 대상지 현황>

- 대상지 : 길동생태공원 내 길동생태문화센터 (1층 전시실 및 로비)

시설명	위치	전용면적	주용도
길동생태문화센터	강동구 천호대로 1298, 1층	280m ²	관광휴게시설

- 시립 서울형키즈카페(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변경(노유자시설) 추진 필요



3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규로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임.
-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아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 된다는 점에서 이에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향후 집행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다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길동생태공원점의 입지적 특수성을 살린 외부 연계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바, 이에 향후 시설 운영 시 입지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놀이 환경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임.
- 또한 기존의 길동생태문화센터 1층의 전시실을 키즈카페로 조성함에 있어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 공사 등 세부공정단계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 동의 후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요지

-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시설의 활성화 수단으로 단순히 키즈카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대상지인 생태문화센터는 노후화가 심해 내부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길동역에서 3.3km나 떨어져 있어 접근성 또한 매우 낮음.
 - 특히 야외 생태공원이라는 훌륭한 자원을 두고 노후 건물에 실내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8차선 도로로 단절된 공원과 센터를 잇는 육교 설치 등 접근성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단순 유휴공간 채우기 식의 접근을 넘어, 서울시 유일의 생태공원이라는 정체성을 살린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신동원 부위원장)
- 생태와 관련된 특화형 놀이공간을 조성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시립 키즈카페는 지역적 특성이나 주변 환경(생태공원, 식물원 등)과 연계하여 놀이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까지 담아내는 공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길동생태공원점은 단순한 실내 놀이터가 아닌, 인테리어·교구·야외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생태 컨설팅을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생태 특화 키즈카페’로 조성할 것을 당부함. (김인제 위원)

- 인근 아파트 단지 내에 이미 민간 키즈카페가 운영 중임에도, 8차선 대로 건너편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생태문화센터 내에 공공형 키즈카페를 신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민간 키즈카페 인증제’ 등을 통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효율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적 여건이 불리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함.
(도문열 위원)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342
------------	------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전용시설(사회복지시설)임
- 나. 서울형 키즈카페(시립 길동생태공원점)은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기관명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 위치 : 강동구 천호대로 1298(길동생태문화센터 내 1층)
- 규모 : 전용면적 280m², 지상 1층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 아동 32명(회당) / 종사자 4명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조직·인사관리, 회계·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위탁기간 : 5년(2026.4. ~ 2031.3.) ※ 예정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5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5.9.24.)
- '26년 소요예산(안) : 271백만원(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 인건비 : 109백만원 / 운영·사업비 : 72백만원 / 기자재비 : 90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제7조의 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필요성
 -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운영 사무를 아동의 놀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 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나. 예산조치 : 2026년 본예산 편성 요구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이동요 (☎2133-4804)